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방청장”을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으로,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2조 제목을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을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난구조민간인”을 ““수난구조참여”로, “사람”이란”을 “자”란”으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조민간인”를 “수난구조참여”로, “수난구조민간인”을 “수난구조참여”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단서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한 것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한 것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의10제2항”을 “제12조의11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6제1항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는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제17조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해양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동해광역구조본부의 동해란 다음에 울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해양경찰서)
----	-----------------------

별표 3 과목의 장비 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조
장비
사용법

별표 4 제3호가목2) 중 “구조업무”를 “수상구조업무”로 하고, 같은 호 나

목2) 중 “구조업무”를 “수상구조업무”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전단 중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을 “최근”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로, “한”을 “받은”으로, “후에”를 “후”로,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다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3호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중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을 “최근 1년간”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로, “한”을 “받은”으로, “후에”를 “후”로,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수난구조민간인”을 “수난구조참여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DSC”를 “디지털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Calling)”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2항 본문,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3항, 제12조의5제4항, 제12조의6제3항, 제12조의6제5항, 제12조의6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2조의8제2항, 제12조의9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1제2항, 제12조의12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 서

식에 따라 발급된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

제 호

수상구조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유효기간 :

사진
(3.5cm×4.5cm)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No.001

National Lifeguard Certification

Name :

Date of Birth : (Month. Date. Year)

Certification Number :

Date of Issue : (Month. Date. Year)

Date of Expiration : (Month. Date. Year)

Photo
(3.5cm×4.5cm)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0-2, 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Waters」 and Article 12-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National Lifeguard.

(Month. Date. Year)

Commissioner of
Korea Coast Guard
Region – OO

seal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번호		
	자격증 발급일	유효기간	
신청사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재발급(갱신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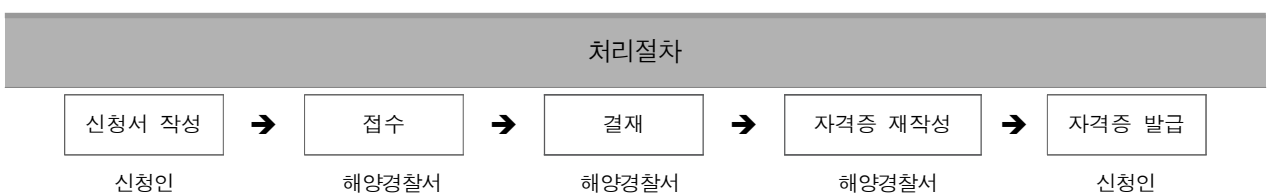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컬러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매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을 갱신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변경) ① --- ----- ----- ----- ----- -- <u>해야</u> ----- -----.
1. ~ 8.(생략)	1. ~ 8.(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 ----- ----- <u>해야</u> -----.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 ----- ----- ----- ----- <u>해야</u> -----.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	제7조(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 ----- -----

의 장에게 유선·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11.(생략)

② (생략)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해야-----

-----해야-----.

1. ~ 11.(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야-----.

제10조(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

-----해야-----.

② -----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자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민간해양구조대원의 경우에는 구조업무 또는 구조 관련 교육·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야

않고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해야-----.

1. ~ 3.(생략)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수난구호민간인의 경우는 제1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2.(생략)

③ ~ ⑧(생략)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

1. ~ 3.(현행과 같음)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 “수난구호 참여자----- 자”란 -----

----- 자를-----

----- 자는 -----

② -----

----- 수난구호참여자-----

-----수난구호참여자-----

1.2.(현행과 같음)

③ ~ ⑧(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

해야.

②

해야.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해야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

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발급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한 것을 포함한다)해야 ---.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해야 ---.

1. 2. (현행과 같음)

발급(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한 것을 포함한다)해야 ---.

제12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⑥ 자격증 발급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11제2항-----

-----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것을 포함한다)해야 ----.

⑤ -----

----- 해야 -----.

<삭 제>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야 -----.

1. · 2. (생략)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성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
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⑤ (생략)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① (생략)

1. · 2. (생략)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② (생략)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③ -----

-----해야-----.

④ -----

-----해야-----.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안은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
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개선·보완 명령
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보완
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
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생략)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
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감독)

① (생략)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
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생
략)

-----해야-----.

④ (현행과 같음)

⑤ -----
-----해
야-----
-----.

⑥ -----

-----해야-----.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야-----.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야-----.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현
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생략)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정지 처분) ① (생략)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

② -----

-----해야-----.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는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야-----.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정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야-----.

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
-----해야-----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1. ~5. (생략)

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 ~ ③ (생략)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

-----.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야 -----.

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
항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신고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
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
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
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에
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
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
항-----
-----.

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

-----.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2. ----- 법 제6조제1항-----
-----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u>하여야</u> 한다. 1.·2. (생략)	----- ----- ----- -----<u>해야</u>-----. 1.·2. (현행과 같음)
---	--